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. 8. 9 선고 2022가단1509 판결 [전세보증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8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5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사천시 C원룸 D호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함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(무변론판결)

판사 이재욱